

법률용어 및 기구 해설

(2021.1.2.)

□ 법령이란?

1. 헌법 :

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,
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,
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2/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

2. 법률 : 국회의결, 대통령이 서명 · 공포

3. 대통령령(시행령) = 국회 · 대법원 · 중앙선관위 규칙 대등한 관계

-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정, 국무회의 의결, 대통령이 공포

4. 부령 : 총리(총리령) + 각 부 장관, 처장 · 위원장(X), 청장?

가.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그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
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는 명령

나.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: 병무, 조세 등

5. 조례 : 지방의회 의결,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기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

- 각 지방별로 다르게 적용 : 재난관련사항 등

6. 법령 : 법률+대통령령+부령 / 명령 : 대통령령+총리령 · 부령

/ 규칙 : 지방자치단체의 장

□ 법령 적용원칙

1. 상위법 우선원칙 : 헌법 > 법률 > 대통령령 > 부령 순
-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되는 사항은 법률에 위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줌
2. 특별법 우선원칙 : 특수한 사정발생시 일반법에 우선 적용(형법, 군형법)
3. 신법 우선원칙 : 공포시기 기준
4. 법률 불소급 원칙 : 행위당시 법률 적용(폐기법률 또는 사후개정법률 적용불가)

- 예비군법 영제15조제2항제3호 :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훈련에 참석하여야 한다.
(개정 2015)
-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8항 :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직장의 장은 예비군법에 의한
동원과 훈련의무를 면제한다.(개정 2014)

👉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 충돌?

□ 고시와 공고

1. 고시 :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
* 주로 변하지 않은 사항
2. 공고 :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
* 주로 일정기간만 유효한 사항

□ 국가기구 및 기관

1. 국가기구 : 국가통치를 담당하는 기관(입법기관, 사법기관, 행정기관)
2. 헌법기관 : 설치근거가 헌법에 명시된 기관
 - 국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
 - *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(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제2항)
3. 행정기관(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)
 - 가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
 - 나.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과 그 소속기관
 - 다. 지방자치단체 : 시·도, 시(행정시 제외)·군 및 자치구(일반구 제외)
4. 중앙행정기관
 - 가. 헌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: 감사원
 - 나. 정부조직법(제2조제2항)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: 부, 처, 청
 - 다. 개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: 위원회
 - 공정거래위원회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)
 - 방송통신위원회(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)
 - * 유형에 따른 분류 : 원, 실, 부, 처, 청, 위원회
 - * 행정사무 관장 기관
 - 국회소속기관(국회사무처), 법원소속기관(법원행정처), 헌법재판소 소속기관(헌법재판소사무처)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)
 -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(행정안전부)
5. 주무부·처 : 해당사무를 관장하는 부·처
 - 가. 공무원임용령 제3조등에 언급하고 있으며 산하에 청이 있을 때 주로 사용
 -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부·처·청의 장, 감사원장,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등
 -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
 - 시·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주무부처는 교육부

6. 중앙관서(국가재정법 제6조)

- 가. 중앙관서 :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,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
- 나. 국회의 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.

7. 주무부장관 : 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(府)의 장관

- 가. **인력자원관련 업무 담당 : 행정안전부장관**
- 나. **식품 및 약품관련 물적자원 관리 업무 담당 : 식품의약품안전처장**
- 다. **교육업무 담당 : 교육부장관**

8.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법제2조)

- 가.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 : 시·도
- 나. 시(**행정시 제외**)·군·자치구(**일반구 제외**)
 - * 행정시 : 제주시, 서귀포시 / 자치구 :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구

9. 지방행정기관

- 가. 일반지방행정기관 : 일반적 국가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(도청, 시청등)
- 나. 특별지방행정기관 :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
(**대전지방국세청, 대전지방병무청등**)
- ※ 주무부장관(중앙관서의장, 중앙행정기관) 소속 지방행정기관 = 특별지방행정기관
(국방부 소속 지방행정기관 : 대전지방 병무청)

10. 재난관리주관기관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의2호)

- 가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
예) 행정안전부 : 정부중요시설 사고,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등의 수난사고

11. 재난관리책임기관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)

- 가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(행정시를 포함한다)
- 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(약 90개 기관 지정)

12. 공공기관(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)

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
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: 경기도시공사등
-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: 한국산업은행, 한국전력공사등
- 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 - 1)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 / 국무조정실 주관
 - 2)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

□ 법률용어 해설

1. 사태 구분

가. 비상사태 : **전시와 사변**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.

나. 통합방위사태(국지도발 상황)

- 국방부장관(갑종, 둘이상 시·도 을종사태), 행정안전부장관(둘이상 시·도 병종사태) 이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**건의** ->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 **심의**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
- 을종, 병종사태 : 지방경찰청장,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시도지사에게 건의 -> 시·도통합방위협의회 심의거쳐 시·도지사가 선포

다. 재난사태 (평시): 행정안전부장관 -> 중앙민방위협의회 **심의**
-> 행정안전부장관 선포

라. 특별재난지역 선포(평시) : 중앙대책본부장 -> 중앙위원회 **심의**
-> 대통령에게 건의/ 대통령이 선포

2. 직위, 직급, 직책

가. 직위 : 직무수행을 위한 서열 (사원, 대리, 과장, 차장, 부장등/ 대위, 소령~)

나. 직급 : 직무의 등급(직위+년수 : 부장 3호봉 등 / 중령3호봉~)

다. 직책 : 직무상 책임이 따른 구분(팀장, 본부장 등 / 작전참모, 사업단장)

3. 형의 확정, 집행

가. 피성년 후견인, 피한정 후견인 :

의학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행위능력 제한,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

- 민법(피한정 후견인) = 형법(심신 미약자)

* 후견인 : 재산관리 및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 등

- 민법(피성년 후견인) = 형법(심신 상실자)

* 청구 :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, 미성년후견인등

* 후견인 :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, 본인 선거권 제한 등

나. 파산선고 : 경제적 파탄, 법원직권 선고, 거주이전, 공직등 제한

복권 : 당연복권(면책결정 확정등), 신청에 의한 복권(채무전부 변제등)

다. 기소유예 : 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**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**(무죄)

*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

라. 선고유예 : 기소는 했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**2년**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(유죄)

마. 집행유예 : **3년**이하 징역형에 대하여 판사의 선고가 이뤄져 형은 확정됐지만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 (유죄+전과기록) * 예) 징역2년 집행유예 3년

바. 형 집행 : 확정판결에 의한 형집행(징역 1년 확정 : 교도소 수감)

사. 형 집행정지 : 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집행을 일시 정지 (임산부, 질병등)

아.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(특별사면등)

4. 공무원 자격 박탈(국가공무원법)

가. 징계종류 :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(停職)·감봉·견책(譴責)으로 구분
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9조)

나. 파면, 해임 : 공무원에서 강제로 퇴직시킴(신분박탈)

- 파면 : 연금불이익, 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/ 해임 : 3년간 공무원 임용불가

※ 기록유지말소이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(경징계3년, 감봉5년, 벌금7년)

단, 음주사고의 경우 2014년이후 기록유지말소에서 제외

다. 탄핵 :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국회의 소추등에 의한 심판, 파면

☞ 장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, · 헌법재판소 재판관· 법관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
위원· 감사원장· 감사위원 등 대상

5. 기준소득월액,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

가. 기준소득월액 : 과세하는 연간 소득(가족수당등 비과세항목 제외) ÷ 12개월

*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: 하한액 32만 원 · 상한액 503만 원(2020년)

나.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: 2020년도 539만원

예) 예비군이 훈련중 사망시 사망보상금 : 539만원 X 24배 = 12,936만원

□ 훈련 및 동원관련

1. 동원

가. 병역법 : 동원령 선포 -> 관할 지방병무청장 -> M+(5)00부대 집결

-> 현역신분으로 전환 * 통상 1~4년차(관할 지방병무청 훈련소집, 동원훈련)

나. 예비군법 : 동원명령(국방부장관, 수임군부대장, 수탁경찰서장)

-> 2021.1.2. 12:00부 / A공설운동장 집결 -> 지역별 6H, 24H, 48H내 집결

-> 예비군 신분 * 통상 5~6년차(수임군부대 훈련소집)

2. 소집통지서 수령의무, 전달의무

가. 수령의무 : 본인(대법원 판례)

나. 전달의무 : (자발적으로 수령시) 세대주 등(세대주, 가족중 성년자,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등)

다. 본인, 세대주등외에는 법률적 의무 없음

3. 예비군훈련관련 대법원 판례

가.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거부시마다 처벌 : 매훈련시 처벌

나. 소집명령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충훈련통지에 불응 : 처벌 불가

다. 중상을 입고 입원한 경우 훈련받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: 처벌 불가

라. 중상을 입고 입원한 자가 훈련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: 처벌 불가

마. 소집통지서 전달시 민법상 초일 미산입원칙 적용여부 : 적용

예) 1.10훈련소집일 -> 7일전 소집통지서 전달 -> 1월 2일 자정前

바.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훈련에 입소한후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중시 처벌여부 : 처벌

나는 1등합격! 우리는 전공석 석권!